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개정 계획(안)

☐ 재난 상황보고 ☒ 정책보고 ☐ 언론대응 ☐ 회의·행사 ☐ 동향보고 ☐ 기타

1 추진배경

- (법제역량 부족)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 등 타(他)부처에서 소방청 소관 제·개정안에 대하여 법체계에 대한 내부검토를 충실히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심사절차 정비) 현행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상의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매뉴얼로 보완·운영해 온 일부 절차를 개정·신설하여 정식 제·개정 절차로 편입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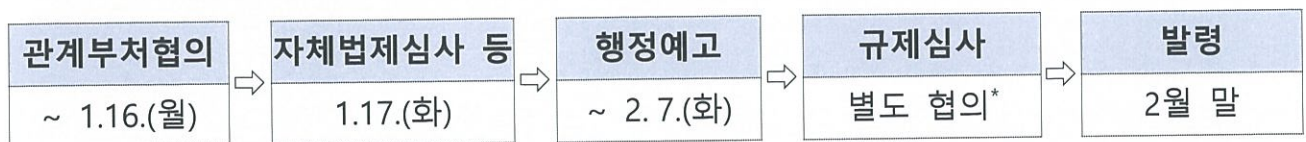
2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① 제·개정안 사전검토 확대	법령안의 경우에만 사전검토	행정규칙까지 확대
② 의견수렴 대상 확대	관계부서	관계부처
③ 행정예고 실시의무 명확화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문구 삭제
④ 법령안 상임위 제출 주체	법령안 주관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⑤ 일몰제 설정 변경	유효기간	재검토기한

- ① (사전검토 확대) 법령에만 시행하던 사전검토를 행정규칙 제정안까지 확대하여 입안절차 개시 전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도모
- 불필요한 고시나 유사 중복 행정규칙 신설 억제 / 법체계 정비
- ② (의견수렴 대상확대) 시·도 소방본부 및 관련 부처도 의견수렴 대상임을 명확히 함 *의견조회 시, 시·도 및 관련 부처 누락 다수 발생

- ③ **(행정예고 실시의무 명확화)** 모든 행정규칙은 행정예고 대상¹⁾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행정예고를 생략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문구를 명확히 함
- 행정예고 절차·기간을 명확히하여 일반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현 행)**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개정안) <삭제>**
 ↳ 행정예고 대상이 별도로 있어 이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④ **(법령안 국회제출 주체 일치)** 입법예고안 및 제·개정이 완료된 행정규칙안의 상임위 제출* 주체를 법령안 주관부서에서 혁신행정부무담당관으로 변경함
- *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 등의 상임위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과 달리 현재 혁신행정부무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제출하고 있음
- ⑤ **(일몰제 설정 변경)**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19.8 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시행하는 훈령으로, 재검토기한으로 일몰제* 정비
- * 「**(현 행)** 유효기간 - 법령에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정규칙
(개 정) 재검토기한 - 법령에 위임에 따라 제정·시행하는 행정규칙

3 향후 추진계획



* 감사담당관실과 규제심사 일정 협의 예정

1)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u>소방청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u>소방청과 그 소속기관</u> ----- ----- ----- ----- -----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주관부서”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u>훈령·예규등(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실·과·담당관 등의 부서</u> 를 말한다. 7.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u>실·과·담당관 등의 부서</u> 를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훈령·예규 등</u> ----- ----- ----- <u>부서</u> ----- -----. 7. “관계부서”란 <u>주관부서가 소관</u> ----- <u>처리할 때 협조를 받아야 하는</u> ----- -----. 8. “소속기관”이란 「 <u>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u> 」 제2조에 따른 <u>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u>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② (생략)

③ 관계부서는 제정·개정·폐지 이유, 주요내용 및 제정·개정·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장 입법계획

제6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7조(입법계획의 수정) ①·② (생략)

제3장 입법계획

제8조(법령안의 입안) ①·② (생략)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정·개정·폐지 이유-----

-----.

④ (현행과 같음)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조정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1월 20일-----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①·② (현행과 같음)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8조(법령안의 입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률-----

-----.

④ · ⑤ (생략)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생략)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 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생략)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③ ----- 하위법령
----- 대하
여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략)
2. 관계기관 협의서
3. (생략)
- ③ (생략)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
에 대한 의견 제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
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부
무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
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
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
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1조

1. (현행과 같음)
2. ----- 검토의견서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
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검토하여 -----

----- 혁신행정법
무담당관에 제출-----

-----,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의견조
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해
당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

----- 제출한 -----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치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② (생략)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영향평가) 주관부서는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를 통한 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치,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심사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 입법예고 전-----
-----.

제17조(관계기관 협의·영향평가·서식승인의 동시 실시) -----

----- 제16조에 따른 서식 승인 신청을 -----.

<삭 제>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

----- 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국무조정실과 ---.

② -----

-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20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
· 국무회의 상정)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신 설>

제24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법제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제정

-----.

<삭 제>

제20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
· 국무회의 상정) ① -----

-----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에게 ----- 국무회의
의 상정 요청을 하여야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전자문서 발송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주관부서는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 도달 사실 및 재정소요추계서 등 그 밖에 접수 요건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4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

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

----- 그 법률안에

-----.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의원발----- 그 의견을 제시받-----

-----.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

률안의 검토) ① (생략)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신설>

제27조(훈령·예규등의 입안) ① ~

③ (생략)

④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정안 입안 시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에 관해서는 제9조

률안의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소관기관 및
법제처-----.

-----.

<삭제>

제5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제27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결재 전에 -----
-----.

제28조(훈령·예규등의 결재) 주관부서는 행정규칙 제·개정 계획을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를 준용한다.

제29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
부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예규
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
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하고,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훈령·예규등의 발령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
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
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
·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
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직제·기록관리·물품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관계기관 의견수렴) 주관부
서는 제27조에 따라 훈령·예규등
을 입안하면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 예규등의 발령안

제30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
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예규등
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
· 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
다.

<신 설>

제30조(개정안 사전검토) ① 주관부
서는 혁신행정부무담당관에게 법
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개정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법제처
의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에 따
라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사전검
토 실시 결과 입안에 필요한 사항
을 주관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
사) ①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
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
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부
무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
청하고,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이
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
· 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
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직제·기록관리·물품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훈령
·예규등의 발령안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부무담
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개정계획서

2. 제·개정이유서

3. 의견조회 결과

4. 제·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
문대비표

5. 그 밖에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이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2. 행정규칙 상호 간 상충 여부

3. 위임입법의 일탈 여부

4. 재량권 남용 여부

5. 그 밖에 형식, 자구, 체계에 관
한 사항

<신 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법 제심사 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위임입법 일탈 등 심사안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는 서식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심사와 동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예고) ① 주관부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단축 또는 생략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 요청을 받은 혁신행

정법무담당관은 정책의 취지, 주요 내용,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규제심사 등) ①·② (생략)

제32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신 설>

①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예규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

제33조(규제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제33조에 따른 규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 완료에 관한 내부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

----- 발령
번호-----

-----.

③ -----

라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
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신 설>

제33조(훈령·예규등의 입안) ①
(생 략)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
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
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
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
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④ (생 략)

제10장 법제정비

제34조 (생 략)

제35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
부서는 제34조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
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 등재-----

-----.

제35조(상임위 제출)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은 제·개정이 완료된 행정
규칙을 「국회법」 제98조의2제1
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장 법제정비 등

제36조(법령 등의 해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
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
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
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7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38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
----- 제37조-----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부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36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신설>

제37조 (생략)

제3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

----- 제38조 -----

-----.

<삭제>

제7장 보칙

제40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삭제>

제4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신설 되는 별표 및 서식

◆ 부패영향평가기준을 신설하여 주관부서의 부패영향평가 작성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매뉴얼 및 구두안내로 운영하던 법체계·자구 ㉠검토의견서 ㉡행정예고 단축사유서를 정식 법제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회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례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제당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당원칙, 제당원위, 제당기준, 제당행사절차 등 제당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제당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 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 대행 시 위탁 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자원 기증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익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무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제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서	
□ 검토요청 안건	
법안명	
구 분	제·개정 입법방법 소관부서 담당자
□ 검토의견	
□ 참고사항	
* 체계지구 의견제시는 해당 부서의 법령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계의 의견은 참고로 활용하면 됩니다.	
□ 검토결과	
[] 입안 진행 [] 재검토 요청	
검토자 :	
확인자 :	

별표 <신설>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행정규칙명			
구 분	[] 제정	[] 개정	
형 식	[] 훈령	[] 예규	[] 고시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협조부서	부서명		
	담당자		
입법일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20 / (일간)	
	행정예고 (예결)	20 ~ 20 까지 / (일간)	
첨부자료	1. 행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별지 제1호서식 <신설>	
행정예고 기간 단축사유서	
행정규칙명	소관부서
단축사유 분 류	1. []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행정예고 기간 단축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 - -	
행정예고 단축 요청 기간	20 ~ 20 / (일간)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단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과 장(성명) (서명 또는 인)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제1호서식에서 이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	---------------

붙임 3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 매뉴얼

① 제정안 사전협의	◆ 제정안의 경우 사전 검토 의뢰 메모보고 <소관부서 ⇒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제정계획 결재 前 제정 사유·필요성,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② 제·개정 및 폐지 계획	◆ 제·개정 계획(안) 마련 및 보고(결재) <소관부서 ⇒ 결재권자> - 제·개정사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등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처리(제정:청장 / 중요:청장 또는 차장 / 일반:국장)
③ 관계부처 협의 (10일 이상)	◆ 의견조회 공문 발송 <소관부서 ⇒ 모든 중앙부처·청·위원회, 시·도, 소속기관 등>
④ 개정안 사전협의	◆ 행정규칙 개정 관련 사전협의 메모보고 <소관부서 ⇒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법령과 타 행정규칙과의 정합성 및 체계 수정 등
⑤-1 사전규제검토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국조실> - 규제 대상 여부 사전검토 의뢰(감사담당관실로 온메일 전송) ⇒ 대상여부 결정(국조실) ⇒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 ㄱ 대상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비용 검증(규제심사 전) ㄴ 비대상 : 확인증 발급(행정예고 완료 후) ※ 규제담당자 문의 (감사담당관 ☎ 7314)
⑤-2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의뢰 공문 발송 <소관부서 ⇒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계획서, 제·개정이유서, 제·개정안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의견조회 결과 등 첨부 ※ 의뢰하는 행정규칙이 1개 이상일 경우 공문 개별 발송 ◆ 별지 서식 제·개정 시 별도 공문 의뢰 ◆ 제·개정안 심사 후 소관부서에 결과 통보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소관부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행정규칙 상호 간 상충 여부, 위임입법 일탈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형식, 체계·자구 등 검토
⑥ 행정예고 (20일 이상)	◆ 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 전자공청회 → 의제 등록) <소관부서> 또는 ② 관보게재(행정포털 → 전자관보 → 관보등록) <소관부서> ※ 원칙 - 행정예고 실시 / 예외 - 예고기간 단축 및 생략(법무계 공문요청) ※ 공고번호, 공고제목, 공고일 : 담당자 문의(운영지원과 ☎ 7314)
⑦ 규제심사	◆ 자체 및 국무조정실 등 규제심사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국무조정실> - 자체규제심사 ⇒ 규제 ^{감사담당관}행정규칙 ^{법제처(정부입법지원시스템)}사전검토 ⇒ 예비심사(비중요규제)·본심사(중요규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담당자 문의(감사담당관 ☎ 7314)
⑧ 결과 보고	◆ 법제심사,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등 보고 내부결재 <소관부서>
⑨ 발령번호 부여	◆ 발령 3일 전 발령번호 부여 요청 <소관부서 ⇒ 혁신행정부무담당관> - 방법 : 첨부서류* 및 발령 일자를 기재하여 메모보고 *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결과보고서,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심사 통보문서, 규제심사확인증 ※ 훈령·예규는 누년 일련번호, 고시는 연도별 누계번호 부여하여 행정규칙 발령
⑩ 발령 및 통보	◆ 행정규칙 제·개정 발령 및 통보 <소관부서> ※ 상위법령에 관보게재를 명시한 경우는 필수, 그 외는 소관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관보게재
⑪ 시스템 등록	◆ 발령 후 10일 이내 정부입법지원시스템 등록(필수) <소관부서> ※ 정부입법지원시스템 등록 3일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됨